

# [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규정 개정\_2016.01.01.]

## 제 1조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의 인지행동치료 전문인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조(정의)

인지행동치료 전문인이라 함은 본 학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와 인지행동치료사를 말한다.

## 제 3조(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기준)

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

- 1)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(혹은 전문의)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
- 2) 정신건강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(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두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최상위 자격증 소지자)
- 3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자
- 4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인지행동적 사례개념화가 포함된 치료종결사례를 제출한 자
- 5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통과한 자

### <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기준과 관련한 시행세칙>

- 1) 2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, 최근 2년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5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. 단, 10회기 이상의 집단치료는 2례만 인정할 수 있다.
- 2) 전문가 자격시험에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의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이라 함은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.
  - 가) 본 학회지에 제 1저자나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것
  - 나) 본 학회에서 학술발표(구연) 또는 사례발표를 하거나 워크샵을 주도하는 것
  - 다)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4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 단, 20시간은 대학원 인지행동치료 강좌나 외부교육으로 대체가능
  - 라) 인지행동치료 역서의 저자이면서 본 학회지에 북리뷰를 게재하는 것.
- 4)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의 축어록 및 녹음(혹은 녹화)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5) 자격심사 및 면접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/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.

## 제 4조(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)

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

- 1)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정신건강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(등급 불문)로서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(1년의 임상경력은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의 지도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함)
- 2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
- 3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치료종결사례를 제출한 자
- 4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통과한 자

### <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과 관련한 시행세칙>

- 1)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, 최근 3년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3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. 단, 10회기 이상의 집단치료는 1례만 인정할 수 있다.
- 2) 전문가의 지도감독이라 함은 전문가에게 10회기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았음을 의미한다.
- 3) 치료사 자격시험에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의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4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의 이수라 함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5)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의 축어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6) 자격심사 및 면접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/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.

#### 제 5조(자격기준의 위임)

제 3조 및 제 4조 자격기준 각 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[시행세칙]에 따른다.

#### 제 6조(자격심사위원회)

- 1) 임무: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관장하고,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하며, [시행세칙]의 개정을 심의한다.
- 2) 구성: 본 학회의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7인(위원장 포함)으로 구성한다.
- 3) 위원장: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이 겸임한다.
- 4) 임기: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#### 제 7조(자격의 유지)

- 1) 자격유지: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
  - ① 치료자로서의 윤리규정 준수
  - ② [시행세칙]에 명시된 본 학회 주관 지속교육 참석
  - ③ 본 학회 연회비 납부
- 2) 자격정지: 위 7조 1)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그 자격을 정지한다.

제 8조(본 규정의 개정) : 본 자격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.

#### 부칙

- 1) 개정된 본 자격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[시행세칙]

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
[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규정\_2016.01.01.수정대조표]

	변경 전	변경 후
제 3조 1)  (인지행동치료가 전문가 자격기준)	<p>1) 정신건강 관련분야 박사학위(혹은 전문의)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, 혹은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</p>	<p>1)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(혹은 전문의)를 취득한 자로서 <u>2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</u></p>
제 3조 시행 세칙 1)과 3)  (인지행동치료전문가 시행세칙)	<p>1)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, 최근 3년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5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. 단, 10회기 이상의 집단치료는 1례만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3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이라 함은 본 학회지에 제 1저자나 교신저자로 논문을 실거나, 본 학회에서 학술발표 혹은 워크샵을 주도한 경우를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2015년 9월 개정 의결안&gt;</b></p> <p>3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이라 함은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.</p> <p>가) 본 학회지에 제 1저자나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것</p> <p>나) 본 학회에서 학술발표(구연) 또는 사례발표를 하거나 워크샵을 주도하는 것</p> <p>다)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4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</p> <p>단, 20시간은 대학원 인지행동치료 강좌나 외부교육으로 대체 가능</p> <p>라) 인지행동치료 역서의 저자이면서 본 학회지에 북리뷰를 게재하는 것.</p>	<p>1) <u>2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, 최근 2년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5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. 단, 10회기 이상의 집단치료는 2례만 인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3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이라 함은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.</p> <p>가) 본 학회지에 제 1저자나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것</p> <p>나) 본 학회에서 학술발표(구연) 또는 사례발표를 하거나 워크샵을 주도하는 것</p> <p>다) <u>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4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</u></p> <p>단, 20시간은 대학원 인지행동치료 강좌나 외부교육으로 대체 가능</p> <p>라) <u>인지행동치료 역서의 저자이면서 본 학회지에 북리뷰를 게재하는 것.</u></p>

	변경 전	변경 후
제 4조 1)  (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 시행세칙)	<p>1)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, 최근 3년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3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.</p>	<p>1)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, 최근 3년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3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. 단, 10회기 이상의 집단치료는 1례만 인정할 수 있다.</p>

## [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규정]

### 제 1조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의 인지행동치료 전문인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조(정의)

인지행동치료 전문인이라 함은 본 학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와 인지행동치료사를 말한다.

### 제 3조(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기준)

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

- 1) 정신건강 관련분야 박사학위(혹은 전문의)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, 혹은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
- 2) 정신건강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(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두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최상위 자격증 소지자)
- 3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자
- 4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인지행동적 사례개념화가 포함된 치료종결사례를 제출한 자
- 5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통과한 자

#### <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기준과 관련한 시행세칙>

- 1)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, 최근 3년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5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. 단, 10회기 이상의 집단치료는 1례만 인정할 수 있다.
- 2) 전문가 자격시험에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의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이라 함은 본 학회지에 제 1저자나 교신저자로 논문을 싣거나, 본 학회에서 학술발표 혹은 워크샵을 주도한 경우를 말한다.
- 4)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의 측면록 및 녹음(혹은 녹화)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5) 자격심사 및 면접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/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.

### 제 4조(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)

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

- 1)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정신건강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(등급 불문)로서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(1년의 임상경력은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의 지도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함)
- 2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
- 3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치료종결사례를 제출한 자
- 4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통과한 자

### <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과 관련한 시행세칙>

- 1)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, 최근 3년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3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.
- 2) 전문가의 지도감독이라 함은 전문가에게 10회기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았음을 의미한다.
- 3) 치료사 자격시험에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의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4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의 이수라 함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5)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의 축어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6) 자격심사 및 면접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/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.

#### 제 5조(자격기준의 위임)

제 3조 및 제 4조 자격기준 각 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[시행세칙]에 따른다.

#### 제 6조(자격심사위원회)

- 1) 임무: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관장하고,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하며, [시행세칙]의 개정을 심의한다.
- 2) 구성: 본 학회의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7인(위원장 포함)으로 구성한다.
- 3) 위원장: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이 겸임한다.
- 4) 임기: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#### 제 7조(자격의 유지)

- 1) 자격유지: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
  - ① 치료자로서의 윤리규정 준수
  - ② [시행세칙]에 명시된 본 학회 주관 지속교육 참석
  - ③ 본 학회 연회비 납부
- 2) 자격정지: 위 1)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그 자격을 정지한다.

제 8조(본 규정의 개정) : 본 자격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.

#### 부칙

- 1) 개정된 본 자격규정은 201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[시행세칙]

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